

부천시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1. 8. 31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01. 8. 3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01. 9. 5) 상정

○ 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01. 11. 7)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행정과 조제형)

□ 제안이유

○ 주차장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요금을 인근 타시 대비 약60% 수준으로 낮게 책정 운영하여 왔으나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시민이용 홍보가 정착단계에 이르러 주차요금을 현실화시키고자 함

□ 주요골자

-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월정 주차요금은 인하하고 3급지 공영주차장 요금은 동결(안 별표 1)
- 공영주차장 요금을 조금씩 인상하여 시민들의 주차요금을 인상 체감지수를 낮추고 현재 미시행 중인 월정기 주차중 주·야간 정기주차제 도입(안 별표1제1호)
-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공영주차요금을 현행 50% 할인하여 2시간 무료 후 50% 할인으로 조정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 수혜의 폭 확대(안 별표1제3호)

3. 질의 및 답변요지

○ 심사보류하여 충분히 검토한바 질의·답변없이 의결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수정안요지

○ 불 입

7. 소수의견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관련 제519호
의결년월일	2001. 11. 13 (제91회)

제안년월일 : 2001. 11. 12

제 안 자 : 건설교통위원장

□ 수정이유

- 주차장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주차요금을 인근 타시에 비해 60%로 수준으로 낮게 책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및 시민홍보가 정착단계에 이르러 주차요금을 조금씩 인상하여 현실화를 시키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을 시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후 인상함이 타당하여 인상시기를 내년도로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부칙을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수정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중 “2001년 11월 1일”을 “2002년 1월 1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년 1월 1일.....

[수정안 포함]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노상 및 노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원)

구분	급지	1회주차		1일 주차권	월정가권		
		1구획 최초30분	1구획 10분마다		주간	야간	주야간
노상	1급지	500	300	8,000	80,000		
	2급지	400	200	6,000	60,000		
	3급지	300	100	4,000	50,000		

노외	1급지	500	300	8,000	70,000	50,000	100,000
	2급지	400	200	6,000	50,000	40,000	70,000
	3급지	300	100	4,000	40,000	30,000	50,000

별표 1의 1호 사목 1) 중 “있으며 이 경우 1일 주차요금 및 월정기권의 주차요금은 당해 급지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1.2배로 한다.”를 “있다”로 하고 3호사목 중 “해당”을 “2시간 무료 후 해당”으로 하며, 3호나목 중 “해당”을 “2시간 무료 후 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단위 : 원)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단위 : 원)							
구분	급지	1회주차		1일 주차권	월정기권			구분	급지	1회주차		1일 주차권	월정기권		
		1구획 최초 30분	1구획 10분 마다		주간	야간	주야간			1구획 최초 30분	1구획 10분 마다		주간	야간	주야간
노상	1급지	400	200	(신설)	(신설)			노상	1급지	500	300	8,000	80,000		
	2급지	300	100	(신설)	(신설)				2급지	400	200	6,000	60,000		
	3급지	300	100	4,000	50,000	40,000			3급지	(현행과 같음)			(삭제)		
노외	1급지	400	200	8,000	90,000	60,000	(신설)	노외	1급지	500	300	(현행과 같음)	70,000	50,000	100,000
	2급지	300	100	6,000	60,000	40,000	(신설)		2급지	400	200	(현행과 같음)	50,000	(현행과 같음)	70,000
	3급지	300	100	4,000	40,000	30,000	(신설)		3급지	(현행과 같음)			50,000		

1. 주차요금의 부과기준

가.~나. (생략)

1) 노상주차장 1.2급지의 경우 주차장 이용률을 극대화하고 장기주차 억제를 위하여 1주일 주차권 및 월정기 주차권은 운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정기권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 주차요금 칭 월정기권의 주차요금은 당해 급지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1.2배로 한다.

2) (생략)

아.~차. (생략)

2. (생략)

3.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한 장애인수첩 및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장애인이 동승한 대리운전차량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나. 국가유공자등에우유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차량(상이자가 동승한 대리운전차량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바. (생략)

1. 주차요금의 부과기준

가.~나. (현행과 같음)

1)
.....
.....
.....
.....
..... 있다.

2) (현행과 같음)

아.~차.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가.
.....
.....
.....
..... 2시간 무료 후 해당
.....

나.
.....
.....
.....
..... 2시간 무료 후 해당
.....

다.~바. (생략)